

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9 월 19 일

여 수 시 장

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1964호

붙임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1964호

## **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“제6조제1항” 을 “제6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6조제4항” 을 “법 제6조제5항” 으로 한다.

### 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)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(이하 “공공디자인 대상 요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·제작·설치·운영 또는 관리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의 준수</p> <p>제6조(주민 참여 등)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·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안의 방법을 미리 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2조(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</p> <p>-----</p> <p>----- 제6조제2항</p> <p>-----</p> <p>제6조(주민 참여 등) ①</p> <p>-----</p> <p>- 법 제6조제5항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